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1511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시

대표자 시장 김종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용화, 김주현

피고, 피항소인

정민호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7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차명수, 문성탁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1191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는 원고 A에게 8,445,394원, 원고 B, C에게 각 5,630,26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8.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D 및 피고 ○○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C과 피고 ○○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이 원고들이, 80%는 피고 ○○시가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정민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2,927,435원, 원고 B, C에게 각 146,716,330원, 원고 D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정민호는 피고 ○○시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2,927,435원, 원고 B, C에게 각 146,716,330원, 원고 D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0.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시는 피고 정민호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돈 중 원고 A에게 62,104,538원, 원고 B, C에게 각 40,834,399원, 원고 D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0.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시

제1심판결 중 피고 ○○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안전시설

설치지침'을 '설치지침'으로 고치고, 제4쪽 9~10행 사이에 '2.2.3. 보도 등에 설치하는 경우 다.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1)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하여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시에 대하여

1) 영조물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난간은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난간에 강한 외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난간이 쉽게 파손된 점에 비추어, 난간은 설치지침 2.3.1.나.항을 따르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시는, 설치지침은 내리막 경사의 도로나 교량 위 등 길 밖의 위험도가 큰 장소에 적용될 뿐 이 사건 난간에 적용되지 않고 단지 도로 밖과 도로의 경계를 구분하는 정도로 설계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치지침 2.3.1.나.항이 길 밖의 위험도가 큰 장소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설치지침 2.2.3.다.항의 설명 부

분에 의하면, 길 밖의 위험도가 큰 장소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대하여는 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치지침에서 정한 설계기준은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전체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불어 이 사건 난간이 설치된 인도는 길 밖 옹벽 아래 주차장까지의 높이가 약 2.5m인 점에 비추어 '길 밖의 위험도가 큰 장소'로 보이므로, 피고 ○○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난간의 기둥과 난간 구조물을 상호 결속하는 플라스틱 커플링이 사고 전에 손상된 상태에서 인체에 의하여 가해지는 추가적인 외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곳이므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몸을 부축하기 위하여 난간에 몸을 기대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된다.

⑤ 망인이 추락한 인도는 길 밖 아래 주차장보다 2.5m의 높게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 ○○시는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안전시설이나 경고표지판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난간은 약 10년 전에 설치되었고 육안으로도 연결 부위 일부가 끊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시는 난간의 이상 유무를 별도로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채 9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사실상 방치하였다.

⑥ 피고 ○○시는, 피고 정민호가 망인을 갑자기 껴안아 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민호가 망인을 갑자기 껴안아 밀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난간이 설치지침에 따르지 않은 채 설치된 후 피고 ○○시의 관리 소홀로 손상된 결과 작은 외력에도 쉽게 파손된 점에 비추어, 사고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 ○○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추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시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피고 ○○시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참작은 일반적 과실책임의 경우보다 경감되어야 하고, 더불어 이 사건 난간이 허술하게 설치되었고, 사고 현장에 위험을 방지할 안전시설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 ○○시의 책임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술을 마시고 난간 앞에서 있던 중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추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에 관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고 ○○시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망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일반적인 과실책임의 경우보다 낮게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시는, 피고 정민호와 망인은 서로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정민호의 과실은 망인의 과실과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민호가 망인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정민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정민호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정민호는 인도에 술에 취한 채 서 있는 망인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면 추락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망인을 뒤에서 껴안은 결과 이 사건 난간이 파손되어 망인이 추락사하였으므로, 피고 ○○시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민호가 망인을 뒤에서 껴안아 이 사건 난간이 파손되고 결국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 정민호의 과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첫 월 미만은 올리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17, 19, 22, 24, 26~28호증, 을가 제11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장천(이하 '장천'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1966. 8. 4.생

(2) 연령 및 기대여명: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9세 11월 5일, 32.04년(2048. 7. 15.)

(3) 직업 및 월 소득: 매장판매직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 월 3,497,000원, 장천으로부터 받은 월 급여 100만 원의 합계 4,497,000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들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모든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 39927 판결 참조).

한편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인은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전기공사산업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8.까지 종업원으로 임용훈을 고용하여 도매업자들로부터 싸게 사들인 조명기구를 전기공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설치해 주는 '등대조명'을 경영한 사실, ② 또한 망인은 201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 이전까지 월 4~5일, 일 2~3시간 정도 장천에서 시공한 전기공사의 견적 산출 및 시공된 부분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하고 월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등대조명'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장천에서 근무한 시간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천에서의 업무와 '등대조명'을 경영하는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며,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월 소득액은 장천에서 받은 급여와 '등대조명'을 경영하면서 얻은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망인이 운영한 '등대조명'의 수입은 주로 사업주인 망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반면 자본적 수입은 거의 미미하므로, 망인이 '등대조명'에서 얻은 수입은 망인과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월 소득액은 이 사건 사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발간된 2016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매장판매직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 월 3,497,000원[= 월 급여 2,971,000원 + (연간특별급여 6,313,000원 ÷ 12월, 100원 미만 버림)]과 장천에서 받은 월 급여 100만 원을 합한 4,497,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2031. 8. 3.(만 65세가 될 때까지)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균여명 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개인사업자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그 사람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가동종료일은 2031. 8. 3.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49세의 남성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당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79.3세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6년 5월경 전체 취업자 26,613,000명 중 만 55~64세의 취업자 수는 약 4,708,000명으로 약 17.69%에 이르렀고, 사고 후인 2017년 5월경 취업자는 5,029,000명으로 증가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년 5월 기준 망인의 직종이 속한 건설업 종사자 약 203만 명 중 만 55~64세 종사자는 약 54만 9,00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고, 서비스·판매 종사자 약 603만 3,000명 중 만 55~64세 종사자는 약 120만 2,00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정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

인다.

③ 망인이 장천에서 행하던 업무 내용, 망인의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실제 업무 종사 기간에 비추어, 망인은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 충분히 장천에서 하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판매업의 경우 앞서 본 전기공사업보다 더욱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은 노동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만 60세 이상의 사람도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다) 계산: 별지 표 기재와 같은 402,012,912원

2) 치료비: 852,940원(갑 제7호증)

3) 장례비: 5,000,000원(지출자: 원고 A)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80%

나) 계산

(1) 망인: 322,292,681원[= (일실수입 402,012,912원 + 치료비 852,940원) × 80%]

(2) 원고 A: 4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 80%)

나.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인정금액: 망인 4,000만 원, 원고 A: 2,000만 원, 원고 B, C 각 800만 원, 원고 D 400만 원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 362,292,681원(= 재산상 손해 322,292,681원 + 위자료 4,000만 원)

2) 계산

가) 원고 A: 155,268,291원(= 362,292,681원 × 3/7)

나) 원고 B, C: 각 103,512,194원(= 362,292,681원 × 2/7)

라. 작은 결론

피고 ○○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 A에게 179,268,291원(= 상속액 155,268,291원 + 장례비 4,00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170,822,897원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 ○○시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24.부터 피고 ○○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445,394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8. 24.부터 피고 ○○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에게 각 111,512,194원(= 상속액 103,512,194원 + 위자료 8,000,000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105,881,931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4.부터 피고 ○○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630,263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8. 24.부터 피고 ○○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D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4.부터 피고 ○○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정민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의 피고 ○○시에 대한 패소부분 중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시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 B, C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D, 피고 ○○시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김도연

판사 류봉근